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 사망 시에 평소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·봉사한 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장례 행사를 의회장으로 추진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의위원회 구성함.
- 장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함.
- 장의비용은 해당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서 집행함.

3. 검토의견

이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그 임기 중 사망 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·봉사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기리기 위하여 장례행사를 의회장으로 추진하는데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